

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(제25조의18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

-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에 따른 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에서 산림과학·산림경영·산림환경·산림자원·산림바이오소재·임학·임산공학·산림학 등 산림 관련 분야(이하 “산림 관련 분야”라 한다)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다. 대학원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계, 장비 및 도구의 연구·제작·활용 또는 인증·심사분야 등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(이하 “실무경력”이라고 한다)이 3년 이상인 사람
- 라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을 제외한다)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- 마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·임산가공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- 바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
- 사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
2.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추어 것

- 가. 사무실
- 나.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냉·난방 및 통풍시설이 설치된 실험실

3.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

- 가. 기계톱절단저항력 측정기
- 나. 낙하충격측정기
- 다. 미끄럼마찰력측정기
- 라. 만능재료시험기
- 마. 표면온도계
- 바. 아들자 캘리퍼스(버니어캘리퍼스,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)
- 사. 분광광도계
- 아. 무정전(無停電) 전원장치
- 자. 분석저울
- 차. 수분계(水分計)
- 카. 색도측정기

타. 소음측정기

파. 그 밖에 산림청장이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